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554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2. E

변론 종결 2020. 9. 9

판결 선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4.4.부터 2020. 6. 28.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8. 8. 22.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수입 식육에 관한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위 매매기본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담보로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D은 2019. 3. 14.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내용은 위 매매기본계약에 따른 외 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피보험자는 F,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보험기간은 2019. 3. 14.부터 2020. 3. 12.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G, 이하 '이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피고 D이 F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F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 D은 이를 즉시 변상하되,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피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원고의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 D은 F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F는 원고가 발 행한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3. 4. F에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 라. 2020. 4. 3. 현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보험금 원리금 100,493,150원 및 그 중 보험금 1억 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피고 D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은 연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라 F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원고에게100, 493, 150원 및 그중 1억원에 대하여 2020. 4. 4. 부터 이 사건소장부분이 최종송달된 2020. 6.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은,자신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명의상 대표이 사였을 뿐이고,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한 것도 종전 대표이사였던 H, I등에 기망당한 결과라며 다툰다. 나. 살피건대, 피고 E이 직접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피고 D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자신이 H, I 등에 기망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결국 H, I 등에 기망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구상금 채무를 져야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피고 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

판사 최희준